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錫中

韓國의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for industrial damage in
accordance with Korea's importation

1995年 2月 日

漢城大學校大學院

貿易學科

貿易實務專攻

朴景載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錫中

韓國의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for industrial damage in
accordance with Korea's importation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2月 日

漢城大學校大學院

貿易學科
貿易實務專攻

朴 景 載

朴景載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5年 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2
II.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一般的 考察	3
1. 一般的 概念	3
2. 制度의 必要性	6
3.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重要性	8
3. GATT上의 制度 內容	9
III. 韓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와 問題點	16
1. 韓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	16
2. 主要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	28
(1) 美國	28
(2) 캐나다	34
(3) 濠洲	37
3. 韓國의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上의 問題點	40
(1) 産業被害救濟關聯業務의 二元化	40
(2) 反덤핑關稅制度의 二元化	40
(3) 貿易委員會의 準獨立性	41
(4) 貿易委員會의 非專門性	41
IV. 韓國의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改善方案	42
1. 效率的인 制度運用	42
2. 貿易委員會의 機能強化와 獨立性保障	42

3. 現行關稅制度에 대한 檢討	43
V. 要約및 結論	45
參考文獻	47

그 림 목 차

<그림Ⅲ-1> 輸入急增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 節次圖	23
<그림Ⅲ-2> 덤핑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 節次圖	25
<그림Ⅲ-3> 美國의 緊急輸入救濟制度 節次圖	33

表 목 차

<表Ⅲ-1> 韓國輸入節次的 흐름	16
<表Ⅲ-2> 輸入管理體制 및 制度	17
<表Ⅲ-3> 輸入急增 및 덤핑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比較	26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국제경쟁의 본격적인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내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대 그리고 외국의 輸入市場開放要求에 부응함으로써 국제무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輸入自由化政策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93년 말에는 輸入自由化率이 98.1% 수준까지 제고되어 선진국 수준의 輸入自由化率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市場開放이 계속됨에 따라 예상되는 輸入의 增大는 국내 관련제품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輸入이 급증하거나 不公正 貿易 형태로 輸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國際收支 赤字를 이유로 輸入數量制限 등 각종 산업보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8년 IMF 8조국과 1990년의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GATT) 11조국으로의 移行에 따라 종전과 같은 직접적인 輸入規制手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의 經常收支黑字로 주요교역 상대국들과 많은 通商摩擦을 빚었으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는 서비스와 농산물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부터 貿易委員會를 설립하여 세이프가드(緊急輸入制限措置)制度和 反덤핑

制度 등의 産業被害救濟制度를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制度를 운영함에 있어 외국과의 通商摩擦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GATT조항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가. 輸入에 의한 被害判定과 救濟措置를 건의할 수 있는 貿易委員會의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또한 彈力關稅의 하나인 調整關稅와 緊急關稅의 발동요건 등이 産業被害救濟制度와 일부 중복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등의 問題點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制度的인 보완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研究의 목적을 두었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본 研究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I 章에 이어 II 章에서는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일반적 내용을 考察하는 부분으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정의와 연혁, 제도의 필요성 및 GATT의 産業被害救濟制度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III 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와 주요국의 産業被害救濟制度의 특징을 비교·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上の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같은 問題點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貿易管理制度가 비슷한 先進國인 日本과 競爭國인 臺灣의 制度와 비교한 研究가 필요하였으나 이 두 나라는 法制上の 制度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制度를 發動한 實績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고, 이 制度의 활용도가 높은 美國과 캐나다 그리고 濠洲의 制度와 비교하여 研究하였다.

IV章에서는 우리나라의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上的의 問題點에 대한 制度的인 보완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V章에서는 이상의 研究內容을 要約 및 結論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의 方法은 行政府, 研究機關, 關聯經濟團體 등의 運營實態와 研究報告書 등 文獻을 통한 研究方法에 의존하였다.

II.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一般的 考察

1. 一般的 概念

(1) 産業被害救濟制度의 定義

廣義로 産業被害救濟制度는 “대내외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국내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거나 그 우려가 발생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한 公共介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狹義로는 “국내 시장의 개방에 따른 輸入自由化, 關稅引下, 덤핑攻勢 등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피해로부터 國內産業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産業被害救濟制度라고 하면 협의의 개념인 “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制度”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¹⁾.

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制度에는 公正貿易慣行에 의한 것과 不公正貿易慣行에 의한 것으로 나뉘어진다. 公正貿易慣行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는 價格競爭力의 임의적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輸入急增에 의한 産業被害의 救濟制度를 말한다. 한편 不公正貿易慣行에 의한 輸入은 價格競爭力의 임의적 조작에 의한 輸入을 지칭하며, 이에는 덤핑, 政府補助金支給 등에 의하여 正常價格以下の 價格競爭力을 보유한 物品의 輸入이 포함된다²⁾.

1) 金容變, 「公正貿易下の 産業被害救濟制度 改善研究」, 延世大, 碩士學位論文, 1989, pp.1~6.

2) 姜錫中, 「韓國貿易管理制度의 國際化에 관한 研究」, 建國大, 博士學位 論文, 1990, P.79.

어떠한 貿易慣行에 의해서라도 輸入에 의한 國內産業의 被害救濟措置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貿易뿐 아니라 産業, 地域, 勞動, 福祉 등 다기한 정책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産業被害救濟措置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가 힘들며, 설사 그러한 조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당초의 産業被害救濟를 발동시킨 요건과 動因에 비추어 과도한 公共介入의 성격을 띠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최단기간의 정책 및 조치만 취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沿革

1) 세이프가드 論議 略史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GATT 창설 당시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美議會는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의 실현기회로 생각하고 GATT 협정문에 면책조항의 삽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GATT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내 輸入急増으로 인한 피해문제가 거론되었고, 1960년 GATT 제17차 총회에서는 오늘날 GATT 제19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³⁾.

세이프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동경라운드가 종결될 무렵인 1978년에 가서 시작되었으나, 선후진국간의 입장차이로 결국 1979년 4월 12일 동경라운드협상 일괄 타결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選別商用問題와 最惠國待遇遵守問題였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979년 11월 제35차 GATT총회에서 GATT내에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1982년 제네바 각료회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3) J.H.Jackson, *World Trade and Law of GATT* : 韓國貿易協會 譯, 『GATT 解説』, 1988, p.281.

선·개도국간의 합의는 세이프가드 규범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선·개도국이 합의 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명료성, 범위, 발동기준, 산업조정과의 연계, 보상과 보복 및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상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이후 수차례 걸쳐 선·개도국의 입장개진과 협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만 부각되었을 뿐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협상기반 위에서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총 15개 협상제외중 하나로 선정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선·후진국간에 選別適用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세이프가드 협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GATT 제19조의 緊急輸入制限措置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UR협상에 있어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反덤핑關稅의 沿革

19세기 말에는 덤핑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생산 및 고도의 생산설비를 사용함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각국은 덤핑防止措置를 취하게 되었고, 그 최초의 立法例는 1903년 캐나다의 反덤핑法이다. 덤핑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33년의 세계경제회의로서 이것은 후에 IOT와 GATT 입법과정에 참고가 되었다⁴⁾.

한편, 미국은 193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고율의 보호 관세수단을 통하여 保護貿易政策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16년과 1921년에 각각 제정되었던 反덤핑法의 적용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후 제2차대전 이후에는 GATT를 중심으로 自由貿易主義를 공식 표방하고 세계경제를 적극 주도하였다. 그러나 通商의 自由化를 추진하더라도 전적으로

4) 上掲書, pp.174~178.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자국산업의 보호를 꾀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對外通商救濟政策은 제2차대전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1960년대 까지의 自由貿易主義時期와 1970년대 이후의 保護貿易의 경향이 점증하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자국의 貿易赤字가 증대함에 따라 첫째, 輸入에 있어서 자국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通商秩序를 확립한다는 명목 아래, 해당국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해 反덤핑關稅, 相計關稅制度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國際競爭力이 부족한 산업에 대해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制度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1930년 관세법, '74통상법, '84通商關稅法 등이며, 1916년에 설립된 國際貿易委員會(ITC)라는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事案別로 輸入을 規制하고 있다.

둘째, 輸入에 있어서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농·축산물이나 신기술분야 등의 산업에 대하여는 相互主義原則에 입각하여 市場開放壓力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2. 制度의 必要性⁵⁾

(1) 技術保護貿易主義의 深化와 國際比較優位의 變化

1990년대 세계산업질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들이 핵심기술의 이전을 봉쇄 또는 기피하는 技術保護貿易主義가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

5) 申光植,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91, pp.11~27.

기술산업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및 아시아국가들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이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전통적 비교우위 산업인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 중급 기술집약적 산업에까지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국의 市場開放의 擴大로 국경 없는 貿易이 증대하게 됨에 따라 범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그 생존전략으로서 기업간의 제휴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 전략하에서 최적지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또한 기술개발까지도 실시하는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2) 世界經濟의 블록화 趨勢 強化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하여 GATT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제주의는 1970년대에 들어 미국경제의 상대적 우위 약화, 무역경쟁의 심화, 자원민족주의 등 세계경제여건의 급변에 따라 지역주의가 대두되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선진국 특히 美國 중심의 GATT體制의 限界와 國際經濟의 多極化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공동체(EC), 亞細亞聯合(ASEAN), 협력기구, 자유무역지대(Andean Group 자유무역지대, 북미자유무역지대 등), 지역협력(GCC) 등 그 명칭은 다양하지만 그 목표와 기능은 대동소이한 경제블럭이 1993년 말 현재 세계에는 19개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締約國들간에 自由貿易이나 關稅의 撤廢를 통하여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가능한 한 공통된 關稅, 非關稅 또는 類似關稅障壁을 구축하여 무역상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으로 국가적 이익의 추구하고 역내국가간의 결속을 통한 집단적 이익의 추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UR의 妥結

국제무역질서의 개편을 목표로 미국의 주도하에 농산물,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등 기존의 GATT체제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의 국제무역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시장접근협상, 섬유교역협상, 농산물교역협상, 신규범제정 및 무역관련 투자협상, 분쟁해결절차 등을 위한 제도분야협상, 지적재산권보호협상 및 서비스무역협상 등의 형태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UR의 타결로 新自由貿易體制가 출범하여 세계교역증대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전의 雙務的 協商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우세한 협상력을 가진 미국이나 EC가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保護貿易主義와 自由貿易主義의 중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公正貿易」이라는 구호 아래 교역상대국의 농산물시장 및 금융, 보험, 증권 시장을 포함한 통신시장 등의 서비스산업과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보호문제에 교역의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UR의 타결 이후에도 제도의 운영과 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한 쌍무적 협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

(4) 國際貿易에 있어서의 地球環境保護問題의 擡頭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점차 중요한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의 정화 능력을 무시한 폐기물 방출,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 온 이제까지의 산업소비활동이 인류의

6) 商工會議所, 『國際化時代의 輸入管理制度 發展 方向』, 1994. p.18.

유일한 생존터인 지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환경문제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開發國들도 문제해결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미국은 오존파괴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세 부과조항을 1990회계년도 예산법률에 포함시켜 입법화함으로써 미국내에서 프레온 가스를 냉매 등으로 사용한 제품이나 프레온 가스로 선정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프레온 1파운드당 1.37달러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또한 독일은 1993년에 자동차재생처리법을 제정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자동차제조기업이 자기부담으로 폐차를 수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자동차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EC의 타회원국들도 이같은 독일의 환경보호규정들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貿易抑制效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3.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重要性

自由貿易主義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不公正하거나 또는 급격한 輸入의 增加로 자국의 産業이 被害를 입었을 경우 이를 事後的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발전되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國에서는 유망, 유치산업의 보호, 국제수지防禦 및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事前的 輸入管理制度가 발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輸出入公告, 輸入先多變化制度 및 特別法에 대한 輸入制限 등을 GATT 제18조에 의거 GATT에서 용인받아 事前的 輸入管理制度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GATT의 國際收支委員會의 결정으로 GATT

11조국으로 移行하게 되어 이상의 事前的 輸入管理方式은 전면 禁止 또는 廢止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새로운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事後的 被害救濟方式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産業被害救濟制度는 유망, 유치산업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부 내포하고 있지만 自由貿易主義에 보다 더 역점을 둔 것으로 급격한 輸入增加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을 사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매우 선진적인 제도이며 개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제도 및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4. GATT上的 制度 內容

GATT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國內産業保護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貿易措置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開途國에 대해서는 자국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輸入을 금지할 수 있게하는 등 자국 시장에 대한 원천적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하되 다만 緊急한 輸入急增이나 덤핑 등 不公正한 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 발생의 경우에만 事後的으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TT에서 産業被害救濟制度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公正貿易去來와 관련된 제19조의 세이프가드 條項과 不公正貿易去來와 관련된 제6조의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 條項이 있다. 한편 GATT 제6조의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條項과 관련하여서는 부속합의서로서 反덤핑코드와 相計關稅코드가 마련되어 있다. 다

음에서는 GATT에 규정되어 있는 세이프가드, 反덤핑關稅, 相計關稅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세이프가드 制度

1) 관련조항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輸入急增이 輸入國의 國內競爭産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輸入國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緊急輸入 制限措置라고도 한다. GATT 제19조는 수입국에게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GATT의무를 유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逃避조항으로서 GATT의 기본목적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⁷⁾. 이때문에 GATT 제1조의 다자간 무차별주의에 의한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서 발동되도록 함으로써 수입국의 자의성 개입이나 선별적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GATT 제19조에는 세이프가드의 發動要件, 發動措置, 發動節次, 그리고 被發動國 報復措置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그 해석은 역사적 立法過程과 慣例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일반적인 발동요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讓許關稅를 포함한 締約國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서' 어느 특정제품의 수입이 관련 국내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발동조치로는 GATT 제19조에 세이프가드를 輸入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讓許關稅의 撤回 및 修正의 關稅措置와 數量規制 등의 非關稅措置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발동조치는 그 성격상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점차 완화되는 것이어야 한다⁸⁾.

7) J.H.Jackson, 前掲書, pp.283~299.

셋째, 발동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이 사실을 締約國團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締約國團과 해당 상품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締約國에게 협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지연되면 회복이 곤란한 피해를 야기할 만큼 급박한 사태하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조치를 취한 후에 협의를 시행되어야 한다⁹⁾.

넷째, GATT 제19조 3항 (a)는 세이프가드의 被發動國은 發動國이 동 조치의 발동 후 90일 이내 또는 발동국으로부터 동 조치 발동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진 뒤 30일 이후에 발동국에 대하여 GATT협정에 따라 동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讓許 또는 기타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만약, 긴급한 상황으로 협의 전에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피발동국은 동 조치 발동 즉시 및 그 후의 협의 기간동안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만큼 關稅讓許 또는 GATT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2) 問題點

GATT 제19조 緊急輸入制限措置는 ① GATT 제19조의 규정 및 운영상의 자체문제, ② 逃避條項과 관련한 GATT 제19조의 임의적인 해석, ③ 선진국의 灰色貿易規制措置의 증가에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¹⁰⁾.

첫째, 選別適用이 문제되고 있다. 제19조를 근거로 한 수입제한조치를 특정국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選別適用問題이다. 그리하여 이 선별적 조치에 대한 시비가 동경라운드 협상에서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합의를 볼 수 없었던 최대의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세이프가드의 적용에 따른 무차별적 규제 및 절차적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GATT의 最惠

8) GATT 제19조 제1항 (a)참조.

9) GATT 제19조 제2항 참조.

10) 産業研究院, 『緊急輸入制限措置』, 1987, pp.3~9.

國待遇原則(Most Favored Nation : MFN)에 벗어난 灰色貿易規制措置라는 雙務的 通商協定을 통한 변칙적 輸入規制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다자간 감시기구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보상 및 보복의 경우 被發動國이 약소국일 경우 이들이 강대국의 세이프가드로 인해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로 발동요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특정상품에 대한 輸入急増과 그 결과로서 국내산업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면책조항을 발동할 경우의 중요한 요건이 되나, 이 점에 대하여는 국내산업의 범위와 손해의 인정방법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

넷째, 발동기간 및 한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GATT 제19조는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최대 발동기간이나 구체적인 발동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발동국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동안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2) 反덤핑 關稅 賦課¹¹⁾

1) 관련조항

反덤핑關稅란 정상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輸入되는 물품으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의미한다¹²⁾.

GATT 제6조에서 반덤핑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960

11) J.H.JACKSON, 前掲書, pp.174~191.

12) GATT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년대에 들어와서 덤핑실행 그 자체보다도 반덤핑조치행위가 남용될 것을 우려하여 1967년 반덤핑코드를 제정하였고 동경라운드에서는 同 코드를 개정·보완하였다.

GATT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가) 덤핑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의 상품이 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산업에 도입될 경우 덤핑의 존재가 인정된다¹³⁾.

나) 輸入國의 산업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덤핑輸入이 國內産業에 대하여 손해를 주었는가의 여부의 판정은 ①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 ②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의 가능성, 그리고 ③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遲延¹⁴⁾등의 사실 유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둘째,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세액에 대하여는 '덤핑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에 관한 덤핑의 한도를 넘지 않는 금액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¹⁵⁾. 또한 GATT는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해야 하며 이들을 병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셋째, GATT는 輸入國의 국내산업에 손해가 없을 경우에도 어느 나라의 덤핑 수출에 의해 동종의 상품 수출국인 제3국이 수출시장을 상실하고 그 제3국의 산업이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輸入國이 締約國團의 승인을 얻어 손해를 받은 제3국을 위하여 덤핑수출국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13) GATT 제6조 제1항 (a), (b).

14) GATT 제6조 제6항 (a).

15) GATT 제6조 제2항.

16) GATT 제6조 제2항.

17) GATT 제6조 제6항 [b].

2) 問題點

현행 반덤핑관세를 개선하자는 논의는 ① 현 코드의 불명확성과 개도국의 가입 부진에다가, ② 현 코드는 신제품개발이나 급격한 환율변동 등 동태적인 상황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덤핑판정을 둘러싼 마찰이 증가하고, ③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迂廻덤핑 등 새로운 덤핑관행이 점차 증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반덤핑 코드 규정이 안고 있는 불명확성 및 抽象性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UR협상에서 ① 덤핑 및 피해결정 등 반덤핑관세부과 기준, ② 반덤핑관세부과 절차, ③ 덤핑에 대한 현행 규제조치의 검토 및 일부 반덤핑관행의 타당성 여부를 주요 쟁점분야로 하고 있어 이들 쟁점에 대하여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 相計關稅制度¹⁸⁾

1) GATT 및 관련코드의 規定

GATT 제6조 제3항에서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부여하는 獎勵金 또는 補助金을 상쇄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그 부과절차나 부과내용이 반덤핑관세와 같거나 유사하나 그 발동요건이 “보조금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계관세에 있어 가장 핵심

18) J.H.Jackson, 前掲書, PP.193~198.

적인 문제는 “보조금”이라는 용어인데, 이에 대해서는 GATT 제6조의 상계관세 적용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상계관세 및 보조금 코드이다. GATT 제6조 이외에도 상계관세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16조의 補助金規定 및 제23조의 無效化條項이 있다.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① 原産國 또는 수출국에서 당해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하여 直·間接으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이 교부되고

② 이와같은 보조금을 받은 商品輸入에 의해 輸入國의 기존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고 혹은 받을 우려가 있고 또는 신규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으며

③ 輸入國의 국내산업이 받는 손해 등은 그 보조금의 영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¹⁹⁾.

이와같은 발동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상계관세의 稅額을 당해 보조금의 추정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소비로 충당되는 동종 商品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수출할 때에 면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간접세의 면제를 이유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²⁰⁾.

한편 어느 나라의 수출보조금에 의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수출보조금에 의해 동종상품의 수출국인 제3국이 수출시장을 잃고 그 나라의 산업이 손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국이 GATT 條約國의 승인을 얻어 그 손해를 받은 제3국을 위하여 수출국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²¹⁾.

19) GATT 제6조 제3항 및 제6항 (a).

20) GATT 제6조 제3항 및 제4항.

21) GATT 제6조 제6항 (b).

2) 問題點

상계관세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보조금지급관행에 기인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이외에도 상계관세 부과절차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계속하여 속출하여 왔다.

상계관세 부과절차와 관련된 문제로서는 ① 무협의성 상계관세조사의 남발과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② 이용가능한 정보활용에서 조사당국의 수출자에 불리한 증거가 되는 정보사용의 가능성 尙存. ③ 상계관세가 보조금 수준이 미미하거나 한계공급자인 경우, 공공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제거를 위한 (보조금액 만큼) 필요수준 이상인 경우 등에 부과되어 수출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례의 증대. ④ 存續期間의 불명시와 수출자의 早期再審請求權의 불인정에 따른 상계관세의濫用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UR에서는 협상 협조 방법, 상계가능·불가능 보조금, 국내산업, 실질적 피해, 상계관세의 조사 수행·부과, 상계관세 부과 명령의 持續 및 再審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계관세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EC와 개도국은 상계관세조치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韓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와 問題點

1. 韓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

(1) 輸入管理 體制 및 制度

우리나라의 輸入管理體制는 對外貿易法과 特別法인 각종 개별법령의 輸入關聯條項 및 關稅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輸入管理의 體制는 ①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및 수입선다변화제도, ② 각종 개별법령의 수출입 관련조항에 따른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종합한 통합공고, ③ 특정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 등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산업피해구제제도, ④ 관세법에 의한 반덤핑,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과 같은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각종 국제무역협정 등에 의해서도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현행 국내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도표화하면 <表Ⅲ-1>과 같다.

<表Ⅲ-1> 韓國 輸入節次의 흐름

단 계	수 입 절 차	관련기관 등
수입계약 체결 및 허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계약의 체결 - 국외 물품 매도 약약서 (Offer) 확인 - 수입허가 및 수입추천 (수입제한품목의 경우) 	무역업의 등록 무역대리업의 등록 수입추천 기관
금융기관의 수입 승인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승인 - 수입신용장 (L/C) 개설 - 선적서류의 도착 및 대금결제 	외국환은행
통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 사후관리 	세관

자료 : 상공회의소, 국제화시대의 수입관리제도 발전방향, 1994, p.98.

한편 <표Ⅲ-2>에서 현행의 輸入管理體制 및 制度를 要目별로 개관하여 본다.

<表Ⅲ-2> 輸入管理體制 및 制度

수입관리체제	법적근거	적용사례
I. 일반수입관리체제		
- 무역업	대외무역법 제7조~제13조	
- 무역대리업	대외무역법 제14조~제17조	
- 수입승인제도	대외무역법 제18조~제31조	
- 수입추천 또는 수입허가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II. 수입관리제도		
1. 관세조치		
- 상계관세	상계관세: 관세법 제13조 및 GATT 제6조	없음
- 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10조 GATT 제6조	1988년 이후 8건 (단, 가격인상 약속 및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등을 포함함).
- 할당관세	할당관세: 관세법 제16조	1967년부터 도입·시행.
- 조정관세		1993년 9월 현재 45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그중 중국산 품목이 23개 임).
- 긴급관세		부과시행하고 있음.
- 계절관세		
- 보복관세		없음
- 국제협력관세		기시행
- 수입과징금	· 외국환 거래 담보금: 외국환 관리 규정 · 수입보증금 제도: 외국환 관리규정 · 수입부담금: 대외무역 관리규정 (수입승인 신청금액의 0.1~0.15%를 징수)	1982년 이후 적립면제 1990년 3월 폐지

(2) 産業被害救濟制度의 內容

産業被害救濟制度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수입관리제도가 産業被害救濟制度가 되겠지만, GATT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에는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있다²²⁾.

우리나라는 이들 제도의 운영기구로서 상공부산하에 무역위원회와 재무부산하에 관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는 産業被害救濟 수단별 주요 내용과 전담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세이프가드 제도

① 法的 根據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는 대외무역법 제32~36조, 동법시행령 제64~74조, 그리고 수입에 의한 사업피해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 告示 제90-1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② 擔當機關(貿易委員會)²³⁾

무역위원회는 1987년 7월 발족되었던 것이 1993년 6월 대외무역법 개정과 함께 개편되었다. 현재 상공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무역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에 관한 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준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었다. 産業被害의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준사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행정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輸入으로부터 야기되는 産業被害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방안을 상공부 및 관계행정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이를 위해 수입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피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기관은 정책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결정권은 없다.

22) 상공회의소, 『국제화시대의 수입관리제도 발전방향』, 1994, pp.219~221.

23) 申韓, 「韓國産業被害救濟制度에 관한 研究」, 延世大, 碩士學位論文, 1991, pp.37~38.

무역위원회의 기능은 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의 건의와 국제무역에 관한 각종 조사의 시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産業被害救濟에 관해서는 수입 수량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판정을 내리며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또한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輸入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판정도 내린다. 아울러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등 불공정수입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도 건의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무역에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조사업무는 수입의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및 분석, 국제무역법규와 제도 및 국제적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 및 제재건의, 기타 공정무역의 조장을 위한 일반적인 조사 및 건의의 시행을 포함한다.

③ 發動要件 및 判定基準

대외무역법 제32조는 利害관계가 있는 者 또는 당해 國內産業을 관장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수입량의 증가²⁴⁾

이는 GATT 제19조의 '수입증가'에 해당되며 수입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상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²⁵⁾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우려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²⁶⁾'는 GATT 제19조의 '深刻한 피해'에 해당되나

24)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調査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輸入數量の 급증이 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輸入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國內産業에 대비한 輸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운영절차규정 제2조.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GATT 제19조의 규정에 비해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피해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으로는 ① 공장폐쇄를 포함한 국내산업의 생산시설의 상당한 유희여부, ② 상당수의 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 국내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③ 국내산업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한 고용여부 등을 고려한다.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으로는 ① 국내산업에 있어서는 판매, 시장점유율 및 가동율의 감소 또는 재고의 증가여부, ② 국내산업의 생산·이윤·고용의 감소 또는 임금의 인하추세 여부 등을 고려한다.

다.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1989년 대외무역법 개정 이전에는 '수입과 국내산업발전 저해 등과의 인과관계'로서 조사규정에 "당해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발전 저해 등의 실질적이고 다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이 된 관계"라고 명시하였으나, 법개정 이후 제외되었다.

④ 조사절차

대외무역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당해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長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개시가 결정되면 무역위원회는 동위원회 및 당해 산업관장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당해산업과 관련 있는 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9조.

조사기간중이라도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며,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발동절차는 <그림Ⅲ-1>과 같다.

⑤ 구제조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입수량 제한, 관세율 인상,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지원 등의 구제조치를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구제조치를 결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구제조치를 결정한다.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날 또는 상공부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결정·시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구제조치가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역위원회는 구제조치가 실시된 날로부터 1년마다 그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례검토를 하게 되는데, 동 분석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덤핑防止關稅制度

① 法的 根據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관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8,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운영규정(재무고시 제89-6호)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Ⅲ-1〉 輸入急增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 節次圖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진흥 93-11)

② 擔當機關

덤핑조사 및 부과업무의 총괄은 재무부가 담당하되, 조사과정에서 덤핑여부 및 덤핑률 산정 등 가격조사부문은 관세청이 담당하고,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즉, 산업피해조사부문은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③ 賦課節次

재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여부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이 棄却되나, 그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개시 후 8개월 이내에 조사가 종결된다.

조사결과 결정요인이 충족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한다.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거나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당해물품의 수출자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約束受諾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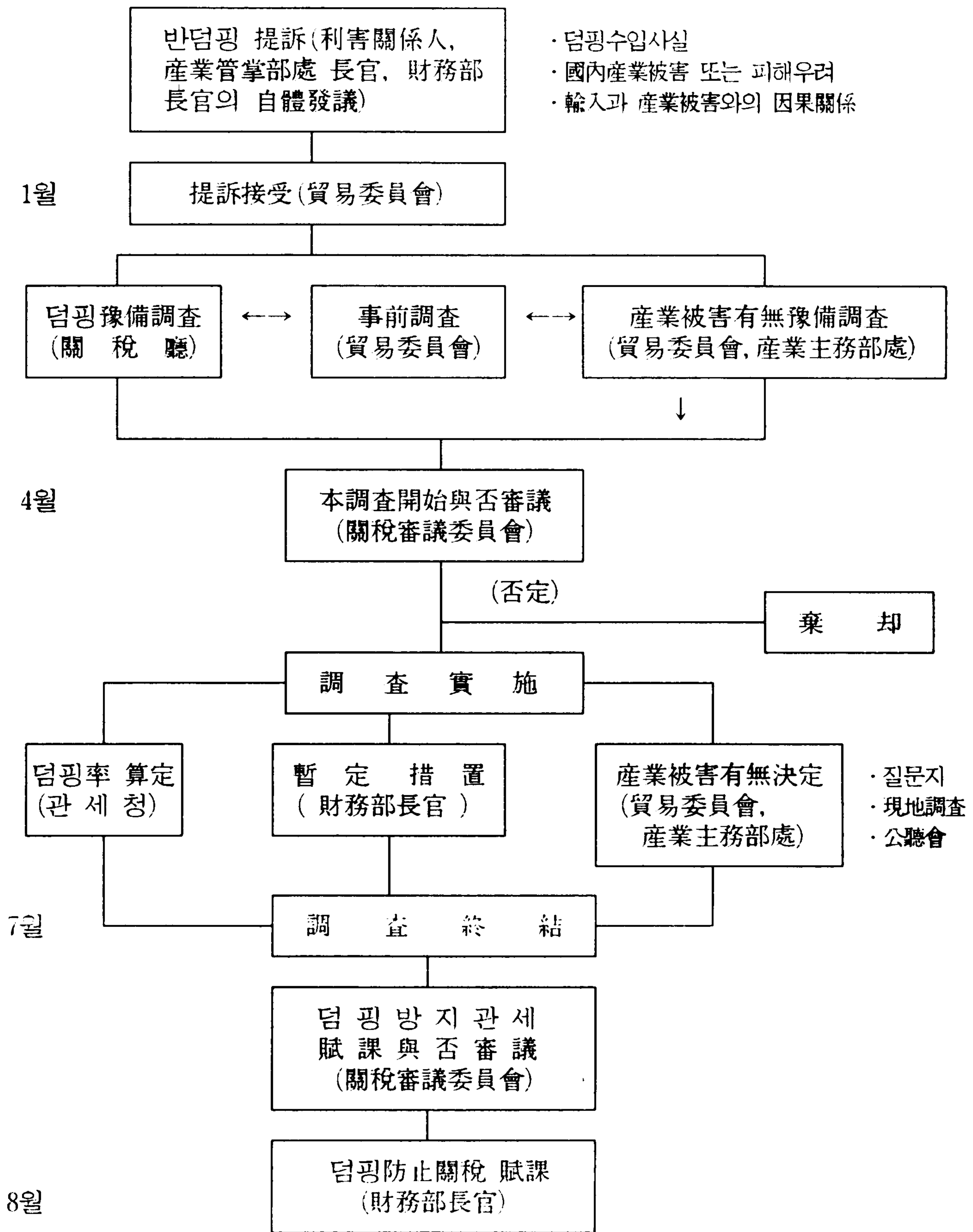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덤핑방지 관세 운영절차는 <그림Ⅲ-2>와 같다.

3) 세이프가드와 덤핑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 比較

輸入急増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와 덤핑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는 피해의 발생원인부터 公正去來와 不公正去來로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으로 구제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점들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비교하면 <表Ⅲ-3>과 같다.

〈그림Ⅲ-2〉 덤핑輸入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 節次圖



자료 : 한국무역협회, 上揭書

주 : 調査期間은 조사개시후 8개월이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延長可能.

〈表Ⅲ-3〉 輸入急増 및 덤핑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 比較

	수 입 급 증	덤 핑 수 입
제 소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사실 (절대적 또는 상대적 수입증가) ·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수입급증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품의 덤핑수입사실 (외국에서의 정상판매가격 이하의 수입) ·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우려, 국내 산업개발이 실질적 지연 ·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
제 소 처	무역위원회	재무부
조 사 기 관	· 무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심의 위원회 - 덤핑여부 : 관세청 - 산업피해여부 : 무역위원회
조 사 절 차	· 질문지, 현지실사, 공청회 및 관계행정기관 자료 등	· (좌 등)
처 리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 30일 · 조사기간 : 120일 · 구제건의 : 45일 · 조치시행 : 45일 · (총소요기간 : 24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 : 1월 · 예비조사 : 3월 · 본 조사 : 3월 · 조치시행 : 1월 · (총소요기간 : 8월 이내)
구 제 조 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세 : 관세율 조정 · 비관세 : 수입제한, 기타 필요조치 	· 반덤핑 관세
조 처	· 상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장	· 재무부장관
기 타	· 양허관세 철회 또는 수입 제한시 GATT 통보 및 이해당사국과 협의	· GATT 반덤핑 방지조치 위원회 통보
관 련 법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제32조~제43조 · 동법시행령 제64조~제78조 ·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제4조의 8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운영 규정

자료 : 상공회의소, 前掲書, p.293.

2. 主要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

(1) 미국

1) 概觀

미국은 輸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광범위한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에 관련된 것으로는 1974 통상법 제201~203조의 緊急輸入制限措置, 不公正去來에 관한 것으로는 1930 關稅法 제703 (a)조 및 제705 (b)조의 相計關稅, 1930 通商法 제733 (a)조 및 제35 (b)조의 반덤핑관세, 1930 關稅法 제337조의 '輸入에 의한 不公正貿易行爲', 그리고 1974 通商 제301조의 '外國政府의 不公正貿易慣行規制' 등이 대표적이다²⁷⁾.

2)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輸入管理制度

(가) 外國政府의 不公正貿易行爲에 대한 輸入管理

1930년 Smoot-Hawley Act를 통하여 미국제품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對美輸出品에 特別關稅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후 미국은 1962년에는 대통령의 報復權限을 설정하고, 1974년에는 301조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報復措置 權限을 구체화하고 일반 국민의 청원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호혜주의를 부인하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²⁸⁾.

27) 金贊鎭, 『美國通商法』, 博英社, 1990, pp.3~22.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여 1988년에는 綜合貿易法을 통하여 수퍼 301조를 신설하여 보복조치를 대통령에서 美國通商代表部(United States Representative : USTR)로 이관시키고 조치대상의 무역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그 발동절차와 보복조치를 구체화시키고 강화시켰다.

① 일반 301조에 의한 규제²⁹⁾

兩國間 혹은 국제협정에 의해서 미국에 부여된 권리가 부정되거나, 외국의 법률, 정책 및 관행이 이러한 국제무역협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외국의 법률이 부당하거나, 불합리 또는 차별적일 때 이로 인하여 미국의 수출이 제한을 받을 경우 이해당사자 및 USTR은 이를 USTR에 청원할 수 있고 USTR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사하며, 또한 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협상을 통한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USTR은 보복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대한 보복조치로는 ① 무역협정상의 讓許適用의 정지 혹은 철회, ② 關稅 등 輸入制限措置의 적용기간 부여, ③ 當該 외국과 구속력이 있는 貿易協定の 締結 등이 있다.

조치대상이 된 상품 또는 경제분야가 당해 不公正貿易慣行에 연관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며, 또는 당해 財貨나 경제분야만의 조치도 가능하다.

② 수퍼 301조에 의한 규제³⁰⁾

우선적 불공정거래관행 및 우선협상 대상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同 慣行이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거나 혹은 그 금액보다도 관행 제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이며 USTR이 매년 발간하는 國別貿易障壁報告書에 기초하

28) 上掲書, pp.101~104.

29) 前掲書, pp.104~113.

30) 前掲書, pp.116~117.

여 우선협상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우선협상국 지정시에는 불공정 거래장벽 혹은 관행이 이루는 법률, 정책, 관행의 수와 정도가 고려되며,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수준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USTR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USTR은 對 議會보고서에 나라명 및 불공정거래 내용을 수록하여 보고하여 官報에 게재하며, 당해국에 대하여 3년 이내에 不公正去來慣行을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키도록 협정을 체결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USTR은 통신개발 시장에 관련하여서도 수퍼 301조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하여,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不公正貿易慣行을 일삼는 국가를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3년 이내에 불공정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제거 혹은 보상하도록 협상을 추진하며, 이에 불응할 때의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③ 일반 301조와 수퍼 301조의 비교

수퍼301조가 일반 301조와 다른점은 일반 301조가 부문별 품목별로 접근하여 특정부문에 대하여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수퍼 301조는 품목이나 부문에 상관없이 불공정무역관행을 일삼는 나라를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협상 및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나) 反덤핑關稅制度³¹⁾ : 關稅法 731~747, 771~778條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한 법규는 1916년 반덤핑규제를 위한 세입법과 1921년의 반덤핑법에 기원을 두나 동경라운드의 반덤핑코드를 국내법에 반영한

31) 前掲書, pp.219~230.

1979년 통상협상법에 따라 1930년 관세법이 신설한 반덤핑규정이 현대적 의미의 반덤핑법규이다.

1979년의 동규정은 1984년과 1988년 통상법개정시 피해판정기준 등을 보강하였다. 반덤핑관세제도의 운용절차를 보면 당해업체의 제소가 있는 경우 상무성은 이를 최종 판결하여 7일 이내에 덤핑관세 예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덤핑마진은 자국의 시장가격과 미국의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産業被害判定은 國際貿易委員會(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가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경우 대상품목의 輸入量 增加로인한 미국내 생산, 소비, 시장점유율, 이익률의 변동, 가동을 저하여부, 재고 및 고용 그리고 임금수준의 변동 등을 조사하여 판정하게 되어 있다.

(다) 相計關稅制度³²⁾ : 關稅法 701~707條, 771~776條

미국은 1897년부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특별관세를 상계관세의 형태를 부과해 왔는데, 1979년 통상협상법 제정을 계기로 보조금 협정체 결국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계시킬 수 있게 상계관세부과 이전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상계관세제도는 상무성과 ITC가 공동으로 운용하며, 그 운용절차를 보면 먼저 해당업체의 제소에 의하여 상무성은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고 ITC는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 판정하게 된다.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제한절차는 반덤핑의 경우에 준하여 같으며 다만 조사기간이 단기간이고 피해조사와 관련한 대상보조금과 국가가 다르다는 점이 구별된다.

32) 前掲書, pp.231~235.

제소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유형을 보면 ① GATT에서 규정한 輸出補助金. ② 정부의 비상업적조건에 의한 자본. 지불보증의 제공. ③ 特惠輸出金融. ④ 換率操作. ⑤ 關稅의 超過賦課. ⑥ 特別所得稅 減免 등의 특혜가 그 대상이 되며. 특히 원료생산자에게 供與된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원료사용제품 생산자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도움을 주게된 경우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公正去來行爲에 대한 輸入管理制度 : 緊急輸入救濟制度³³⁾

(가) 法的 根據

緊急輸入制限措置는 이미 1943년에 발동된 미·멕시코간 互惠貿易協定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1947년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GATT 제19조에 세이프가드로서 채택되게 되었다. 미국은 이후로도 여러 법률의 制·改正을 통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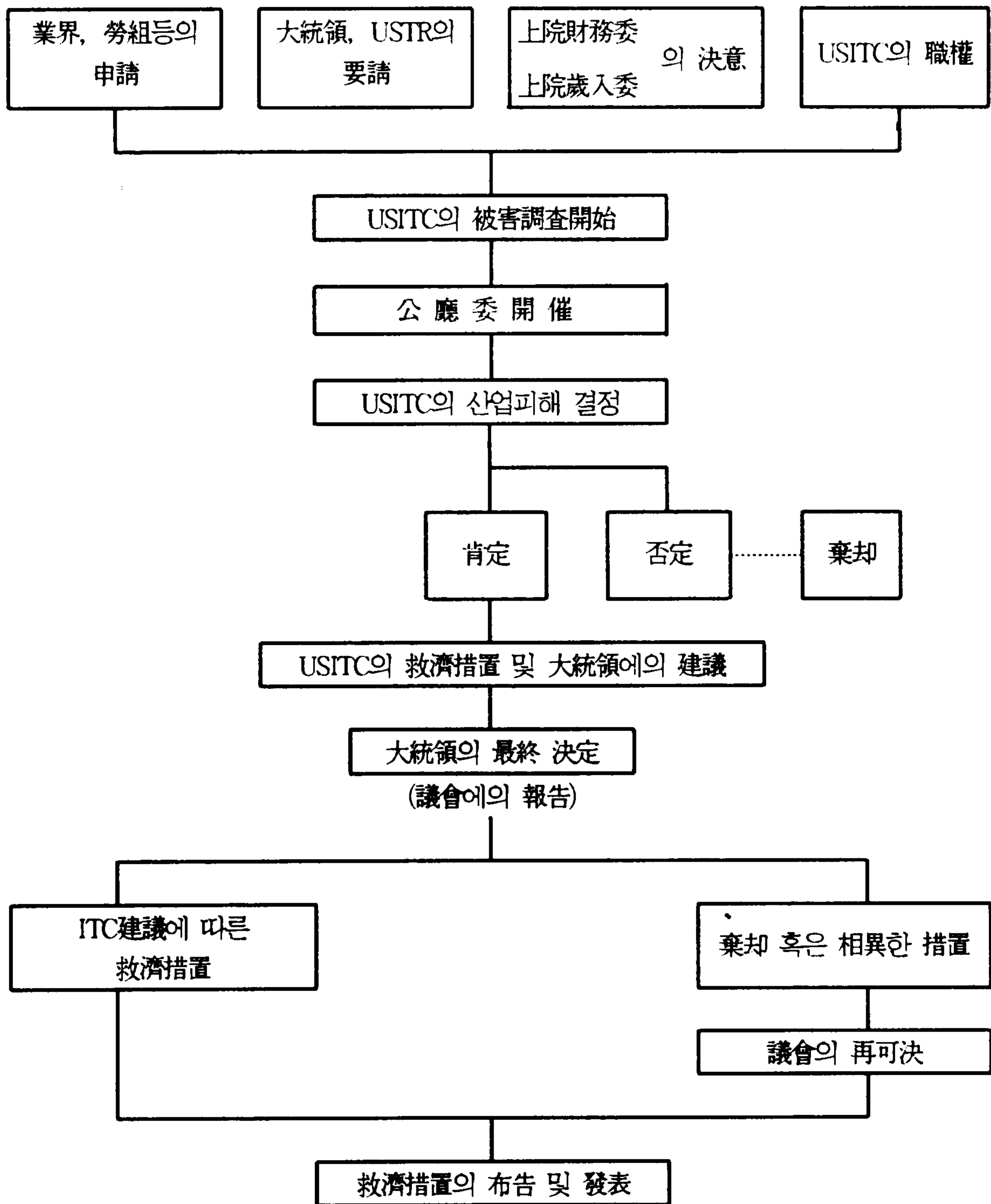
(나) 發動要件 및 節次

특정상품의 輸入急増으로 동종 또는 직접경쟁적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혹은 우려가 있는 경우 업계, USTR 등은 ITC에 제소할 수 있고, ITC는 피해조사 및 판정을 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입구제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때 대통령은 구제조치를 거부 및 수정결정할 수 있고 또한 의회는 결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Ⅲ-3〉은 緊急輸入救濟制度의 節次를 나타내고 있다.

33) 前掲書, pp.179~213.

〈그림Ⅲ-3〉 美國의 緊急輸入救濟制度 節次



※ 구제조치건의 기간 : 접수후 6월이내 (피해여부판정은 120일, 복잡한 경우 15일)
 임시구제조치 건의 : 부패농산물 (ITC 90일 이상 동향감시품목 청원시 28일 이내, 긴급상황의 경우 120일 이내 또는 건의시한전)

자료 : 상공부 무역위원회

4) 國際貿易委員會³⁴⁾

國際貿易委員會는 1916년 關稅委員會로 창설되어 1974년 通商法에 의하여 ITC로 개칭되었다.

ITC는 미국의 대외무역이 국내생산, 고용, 소비 등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조사하는 獨立的, 超黨的, 準司法的 機關으로 獨立規制委員會의 성격을 가진다.

ITC의 조직을 보면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이러한 ITC는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청원하여 조사하고 판정하는 기관이다.

그 주요기능은 ① 輸入增加에 의해 심각하게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 ② 미국산업이 공정가격 이하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輸入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③ 特許權 侵害와 같이 不公正한 貿易行爲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의 실시, ④ 농산물 輸入이 미국농무성의 가격지지원칙을 방해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에게 자문, ⑤ 무역과 관세의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와 輸入水準의 監視·調査, ⑥ 수입, 수출, 국내생산의 통계개발과 국제적인 조사상품 Code의 설립에 참여 등이다.

(2) 캐나다

캐나다는 1984년 特別輸入措置法(Special Import Measures Act : SIMA)의 제정을 계기로 輸出入許可法, 舊덤핑防止法, 關稅定率法(相計關稅規程), 通貨外換法 등을 전면 또는 일부 수정하여 무역관련법을 일원화시켰다. 동법에 의거하여 캐나다는 외국기업의 시장침투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와 反덤핑·相計關稅賦課를 중심으로 한 産業被害救濟制

34) 貿易委員會, 『美國 및 캐나다의 貿易委員會』, 1989.

도를 운용해 왔다.

동 제도의 운용기구로서 캐나다는 輸入審議委員會(Canadian Import Tribunal : CIT)를 두어 왔는데, 그 법적성격은 미국처럼 준사법적인 독립기관이나 그 영향력은 특히 緊急輸入制限措置에서 구속적이기 보다는 권고적인 수준에 그쳐 있다³⁵⁾.

1) 緊急輸入制限措置

(가) 發動要件³⁶⁾

① 國際收支危機時

국제수지 위기시에 캐나다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서 총독 명령에 의거하여 외국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최고 한도는 33.3%의 종가세로 되어 있다.

② GATT 제19조 요건의 경우

GATT 제19조의 발동요건에 부합되거나 또는 총독이 국내산업의 피해방지·구제를 위한 기간 또는 한도내에서 당해 외국상품을 수입규제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총독은 국제무역심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참고하여 수입규제의 실시 또는 거부를 행할 수 있다.

③ 外國政府의 對캐나다 不公正貿易慣行의 경우

여타국과의 상품협정에 의거한 캐나다 권리의 강화, 차별대우 또는 기타의 결과로 캐나다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악영향을 끼쳤거나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타국 정부의 행동·정책·관행에의 대응을 위하여 캐나다정부는 당해상품을수입관리품목에 포함시켜 수입규제를 실시한다. 동 수입규제의 직

35) 上掲書, pp.35~62.

36) 캐나다 國際貿易審議委員會法 제20조 참조.

접적인 목적은 他國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이므로 캐나다 정부의 품목선정에 재량권이 주어진다.

(나) 形態

관세인상, 수입과징금 부과, 수량제한 등인데 최근에는 수량제한(총량쿼타)과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節次

캐나다 國際貿易審査委員會(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 CITT)법 22~30조에 의하면 국내생산자의 緊急輸入制限措置 要求를 위한 제소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소자로서는 국내생산업자, 제소자, 또는 대리제소자가 되며 조사기간은 조사보고서 작성기한이 조사개시 후 180일(90일 연장 가능)로 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의한 피해조사·판정은 CITT가 담당하지만 구제조치의 결정은 부가금 등의 경우 연방재무성이, 수량규제의 경우 연방재무성 및 외무성경제국이 담당한다. 따라서 CITT의 피해조사·판정은 국내에서의 최종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2) 反덤핑(相計)關稅 制度

(가) 發動要件 및 節次

반덤핑(상계)관세부과에 대한 조사는 ① 國稅省次官의 발의, ② 이해관계자의 제소, ③ 국세성차관 또는 수입심사위원회가 특정상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입심사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덤핑조사 및 예비판정은 국세성이, 피해조사 및 최종판정은 수입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또한 캐나다는 자동소멸조항을 두어 수입심사위원회의 최종판정 후 5년이 경과

하는 동안 동위원회의 계속 명령이 없는 한 자동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나) 被害調査 및 判定의 條件

수입심사위원회의 피해조사·판정은 실질적인 피해, 유사상품, 국내생산의 3요소를 고려한다.

- ① 실질적 피해의 평가요소 - ° 심각한 가격인하
° 시장상실
° 가동율저하 및 고용감소
° 이윤감소
- ② 유사상품의 결정요소 - ° 상호 직접적인 경쟁
° 소비자 동일
° 마케팅 구조, 최종 소비자 동일
° 같은 욕구의 충족
° 상호 대체 가능
- ③ 국내 산업의 결정요소 -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점하는 생산자인데 여기에는 정제, 재분류, 포장 등의 서비스와 관련수입상은 제외되며 과도한 운송비용차에 의한 지역시장개념이 허용된다.

3) 輸入審議委員會

캐나다 輸入審議委員會는 1984년 特別輸入措置法(Special Import Measures Act : SIMA)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1988년에 들어와서는 동위원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법에 의거한 캐나다 國際貿易委員會로 개편되었다.

(가) CIT의 조직

CIT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 5명(상근으로 7년 임기의 총독 임명), 감시대리(유고시) 또는 감시위원(5명 이내)의 위원회, 사무국장(총독임명), 직원으로 조직되는데 직원수는 총40명이다.

(나) CIT의 기능

CIT의 기능은 국세성차관 또는 제소자가 덤핑(보조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처리, 산업피해조사, 제소사항의 재심사 등이다.

(다) CITT

CITT는 CIT이외의 관세위원회(Tariff Board : TB)와 섬유위원회(Textile & Clothing Board : TCB)를 통합한 것으로서 위원수는 CIT의 5명에서 9명으로 직원수는 40명에서 100명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그 기능도 CIT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일반 경제 문제 기관 조사, 관세 관련 조사, 국내 산업피해조사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CIT가 SIMA 63조~77조에 따른 설립기구인 점에 반하여 CITT는 1988년 10월 4일立案된 CITT법이라는 독립법규에 의거하여 설립된 명실상부한 産業被害救濟機關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3) 濠洲

輸入增加로 인한 國內産業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호주의 産業被害救濟措置는 關稅quita, 輸入數量規制, 反덤핑·相計關稅, 關稅引上 그리고 國內産業의 支援措置로서의 關稅, 生産補助金, 國産品使用, 農産物價格 協定 등이 있다. 이들 조치 중에서도 호주는 關稅quita, 關稅引上, 輸入數量 規制 등의 緊急輸入制限措置(GATT 제19조 근거)와 反덤핑·相計關稅를 주로 활용해 왔는데, 상공기술성 산하에서 전자는 산업지원위원회(Industries Assistance Commission : IAC),

후자는 호주 관세청 및 반덤핑청의 조사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³⁷⁾.

1) 緊急輸入 制限 措置

(가) 法的 根據

호주는 여타 선진국이 GATT 제19조의 우회조치인 灰色貿易規制措置를 크게 활용해온 것과는 달리 GATT 제19조에 충실하게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해 왔다. 호주의 緊急輸入制限措置에 대한 법적 근거는 關稅法の 輸入禁止規定, 輸入許可規定, 關稅쿼타제規定(237조)에 두고 있다.

(나) 形態

關稅쿼타制度는 특정상품의 輸入을 쿼타량 범위내에서 關稅讓許率로 輸入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호주 정부는 1975년 특정의류품목에 대한 관세쿼타조치 이후로는 동제도를 쿼타설정을 통해서 輸入하는 수단으로서 운용하였다. 호주정부는 관세쿼타제도의 대상품목, 자동차, 치즈와 커피에만 적용하며, 쿼타량의 할당도 호주수입업자에게만 주는 구매자 쿼타제를 운용한다.

수량제한조치는 비관세수단으로서 종래에는 金製造品과 관세쿼타품목이외의 품목에 발동되었는데 현재에는 동 조치의 발동을 자제하여 중고4륜차체, 승용차 정도에서나 발동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요건은 산업지원위원회(Industries Assistance Commission : IAC)의 보고서에 의하면 관세쿼타의 경우에는 산업상황(거래액, 시장점유비중, 수출입실적, 고용, 생산, 가동율), 수입, 시장공급상황, 가격, 그리고 소비자 이익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했다. 또한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호주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비중(80%이하) 하락이 주요결정요인을 이루었다.

37) 貿易委員會, 「濠洲의 産業被害救濟制度」, 1988, pp.22~44.

2) 反덤핑(相計)關稅賦課³⁸⁾

(가) 法的 根據

1975년 反덤핑關稅(Customs Tariff(Anti-Dumping) Act of 1975)이며 동 법은 1981년, 그리고 1988년 9월의 반덤핑청법(Anti-Dumping Authority Act 1988) 등을 통해서 보다 더 명료화·객관화·구체화되었다. 1988년 개정법의 특징은 반덤핑청의 설립(설립 후 5년간 限時存續, 3년후 효율성 검토), 관세청의 관세부과에 관한 장관자문기능 축소, 소멸시효기간(3년)의 도입, 조사절차기한의 명문화 그리고 수입업자의 이의제기시에 실시한 IAC의 덤핑調查廢止 등이다.

(나) 法的 性格

호주의 반덤핑관세부과에서의 법적성격의 부과는 호주의 종래 반덤핑관세규제가 ① 여타국에 비해 과도한 반덤핑조치의 유발, ② 수입국측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 ③ 국내 정부, 생산, 노조에게만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그 개선방안으로서 ①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한 상공기술성장관자문기구로서 반덤핑청 설치, ② 국가이익조항의 삭제, ③ 자동소멸제의 도입 등을 건의한 Gruen보고서를 받아들인데 기인한다.

3) 生産支援委員會와 반덤핑청³⁹⁾

(가) 生産지원위원회

生産지원위원회(IAC)는 1973년 IAC법과 1984년의 IAC 개정법안에 의거하여 상공기술성 산하에서 호주 정부의 산업정책형성, 산업지원조치의 관련산업에 대한 피해, 호주 유망산업의 개발과 성장 촉진, 경제기구변화에 상응한 산업조정

38) 韓國貿易協會, 『濠洲 反덤핑·相計關稅制度』, 통상자료 89~6.

39) 前掲書, 1988, pp.58~66.

추진 등의 업무를 실시하며 상공기술성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이다.

(나) 반덤핑청

반덤핑청은 호주관세청의 부정적인 예비판정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덤핑 및 덤핑피해의 최종적인 조사, 판정업무를 실시한다. 결국 반덤핑청은 반덤핑·상계관세분야에서의 IAC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3. 韓國의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上的의 問題點

産業被害救濟制度와 관련하여 救濟措置를 취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救濟措置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産業被害救濟機關의 독립성과 유해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문제점을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産業被害救濟關聯業務의 二元化⁴¹⁾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關聯業務는 二元化되어 있다. 즉, 세이프가드 제도는 商工部 貿易委員會가 담당하고 있고 덤핑 및 相計關稅制度는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상공성과 상공성산하의 산업지원위원회(IAC)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40) 前揭書, 1988.

41) 상공회의소, 前揭書, pp.289~290.

경우도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운영이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의 국제무역심의위원회 (CITT)로 일원화되어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제도는 대통령직속의 ITC가 담당하고 덤핑 및 相計關稅制度는 상무성이 운영하고 있어 二元化되어 있다.

(2) 反덤핑關稅制度의 二元化⁴²⁾

우리나라의 反덤핑關稅制度의 二元化를 들 수 있다. 反덤핑關稅制度의 주요절차는 신청접수, 조사개시결정, 예비피해·덤핑판정, 최종피해·덤핑판정, 구제조치 시행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관에서 운용하여야 효율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접수와 덤핑판정은 재무부가, 산업피해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그리고 덤핑조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기관의 이원화는 제조자의 자료제출 등 의견제시에 부담을 주고 조사기간을 장기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 EC), 호주, 멕시코는 일원화되어 있으며, 美國의 경우도 최근 反덤핑制度의 二元化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3) 貿易委員會의 準獨立性⁴³⁾

産業被害救濟를 담당하고 있는 貿易委員會는 準獨立機關이다. 미국의 産業被害救濟機關인 ITC는 대통령 직속하의 독립규제위원회로 완전독립의 準司法的機

42) 上揭書, pp.290~291.

43) 前揭書, pp.292~303.

關이며. 예산과 인사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는 상공부장관 소속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위원들이 상공부장관의 提請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산편성과 인사권이 상공부에 있다는 점 등은 무역위원회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貿易委員會의 非專門性

주요선진국의 産業被害救濟機關의 위원들이 전원 상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인만을 상임위원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위원의 비상임화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고 이와 함께 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IV. 韓國의 收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改善方案

1. 효율적인 제도운용

1987년 對外貿易法을 제정하면서 輸入被害調査制度를 도입하여 '國內産業의 發展沮害'를 발동요건으로 삼았으나 1989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GATT 제19조의 '産業에 대한 被害'를 발동요건으로 하여 선진국형인 事後的 産業被害救濟制度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채택은, 輸入品이 자국의 국경선을 통과할 때 關稅나 非關稅 障壁이라는 貿易政策을 동원하는 것과 같이 보다 안이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소극적인 貿易政策이라 한다면, 輸入品이 자국의 국경선을 통과한 후에 國內産業에 피해를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輸入制限, 財政, 金融, 稅制, 技術의 지원, 노동자의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특정무역업자에 대한 輸入의 中止 또는 禁止의 救濟措置 등은 적극적인 貿易政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경쟁조건 밑에서 公正貿易行爲로 인하여 國內産業에 被害를 주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에 적응할 시간적인 여유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輸入에 의한 國內産業의 被害에 대한 조사, 판정 그리고 구제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GATT규범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내산업의 정의,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여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와 피해우려의 유무, 輸入과 被害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판정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사와 판정능력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2. 무역위원회의 기능강화와 독립성보장

貿易委員會의 성격은 첫째, 상공부 산하의 독립·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공부의 職制와 별도의 독립직제로 편성되며, 상설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 심의·의결기관이라는 것과, 둘째, 輸入에 의한 國內 産業被害救濟制度機關으로 輸入에 의한 國內産業被害의 조사, 피해여부의 판정, 적절한 구제조치의 건의 그리고 불공정수출입행위자에 대한 무역업제재의 건의기능을 갖는다⁴⁴⁾.

그동안 실질적인 輸入開放이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경쟁력이 다소 열위에 있거나 산업의 기반정책이 미약한 유망산업, 신규산업 또는 농수산물에 대한 國內 産業被害에 대한 조사신청의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직조, 신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전통산업분야에서 덤핑 등에 의한 수입이나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不公正 輸入去來를 중심으로 한 國內 産業 被害의 조사신청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나 캐나다 국제무역심사위원회와 같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의 전문기관으로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44) 대외무역법 제32조 제12항.

조직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무역위원회의 위원을 常勤化하여 무역 조사실의 증원과 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수입에 의한 國內産業被害調査와 판정업무를 토착화시키고, 특히 미국의 USITC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입절감품목에 대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국내외무역제도의 심층연구도 아울러 병행하여야 한다.

3. 현행 관세제도에 대한 검토

緊急關稅와 調整關稅의 발동요건은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억제, 산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외형상으로는 GATT 제19조가 인정하고 있는 緊急輸入制限措置와 비슷하다고 하겠으나 실제의 발동요건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GATT 제19조보다 제18조 A, C, D항에 더 가까이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발동요건은 대외무역법상의 특정물품의 輸入急増 등에 의한 國內産業被害의 救濟制度和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그 제도에다 흡수시키고 특정물품의 수입억제나 산업구조 변동으로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한 발동요건은 GATT 제20조나 기타 GATT가 인정하고 있는 근거에다 적용할 수 있는 關稅制度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양관세제도가 GATT 제19조나 미국상법 제201조에 의한 緊急輸入制限制度和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GATT 제19조에 근거하는 제도로의 전환과 緊急輸入制限을 위한 관세로서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國際競爭의 본격적인 도입을 통하여 輸入自由化政策을 추진한 결과 1993年末에는 輸入自由化率이 98.1%수준까지 제고되어 先進國수준의 輸入自由化率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輸入自由化의 推進과 병행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國際貿易規範인 GATT의 규정에 따라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不公正貿易慣行의 경우에는 反덤핑關稅와 相計關稅制度를, 公正貿易慣行의 경우는 産業被害救濟制度인 緊急輸入制限措置權에 따라 事後的인 보호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事前的 輸入管理體系에서 벗어나, 多者間 貿易規範을 토대로 貿易管理制度의 정비 및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對外貿易法 및 關稅法 改正은 이러한 貿易關聯制度의 先進化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주로 先進國에 의해서만 활용되어 오던 産業被害救濟制度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에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해 오다가 1989년에 이를 보완하여 GATT 제19조에 접근시킨 선진국형의 제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産業被害救濟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産業被害救濟란 무엇인가, 왜 産業被害救濟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産業被害救濟의 방법과 선진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모델로 참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현황을 담당기구와 절차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産業被害救濟制度의 도입 및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논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제도에 대한 현실적 요구나 수요가 제도의 현실을 능가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기존의 産業被害救濟制度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귀착되고 있는 것이다.

현 産業被害救濟制度는 輸入開放이라는 경제 전반에 걸친 큰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다분히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開途國에서 先進國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産業被害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방법론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한 모습으로 선진국형의 産業被害救濟制度가 도입되었으나 이후의 제도정착이 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첫째,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關聯 업무에 있어서 세이프가드 제도는 商工部 貿易委員會가 담당하고 있고 덤핑 및 相計關稅制度는 재무부가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이원화 문제.

둘째, 反덤핑關稅制度의 신청접수와 덤핑판정은 재무부가, 産業被害調査는 무역위원회(Korean Trade Commission:KTC)가, 그리고 덤핑조사는 관세청이 담당함으로써 제소자의 자료제출 등 의견제시에 부담을 주고 조사기간을 장기화시킨다는 문제.

셋째, 우리나라의 貿易委員會는 상공부 장관 소속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위원들이 상공부장관의 제의에 의해서 임명되고, 예산편성과 인사권이 상공부에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무역위원회의 준독립성에 관한 문제.

넷째, 輸入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판정과 구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貿易委員會의 기관의 성격, 지원인력, 예산규모 등이 외국에 비하여 전문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첫째, 輸入에 의한 國內産業의 被害에 대한 조사와 판정 그리고 구제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판정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전문인력을 확보·운용함으로써 조사와 판정능력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貿易委員會는 산업피해의 조사, 판정의 전문기관으로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조직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상정규모화 내지는 전문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緊急關稅와 調整關稅의 발동요건은 대외무역법상의 특정물품의 輸入急増 등에 의한 國內産業被害의 救濟制度和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그 제도에다가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및 研究資料

- 金基洪. GATT11條國 移行과 韓國의 輸入管理. 産業研究院. 1989.
- 金碩祚. 美國의 通商關係法 概要. 韓國貿易協會. 1984.
-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88.
- 金重雄. 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 韓國開發研究院. 1981.
- 金贊鎮. 美國通商法. 博英社. 1990.
- 朴炳鎬. 國際貿易論. 博英社. 1985.
- 申鉉種. 貿易政策論. 博英社. 1991.
- 申東洙. 貿易實務. 貿易經營社. 1990.
- 劉承旻. 國際化時代의 公正去來制度-貿易 및 貿易政策의 競爭政策的 意味-,
韓國開發研究院. 1989봄號.
- 沈載鉉. 現代韓國貿易論. 貿易經營社. 1990.
- 俞暎外. 輸入自由化에 對備한 産業被害救濟制度. 産業研究院. 1986.
- 李鏞熙外. 先進國의 通商政策과 通商機構-中進國 規制側面을 中心으로-,
産業研究院. 1986.
- 趙顯泰. 美國通商戰略의 轉換. 産業研究院. 1987.
- 韓柱燮. 國際商學. 東星社. 1991.
- 姜錫中. 韓國貿易管理制度의 國際化에 관한 研究. 건국大. 博士學位論文.
1990.
- 申光植.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KTC기능 활성

- 화를 중심으로-,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1991.
- 申 韓, 韓國産業被害救濟制度에 관한 研究-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세大, 碩士學位論文, 1991.
- 崔弘健,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研究, 한양大, 博士學位論文, 1992.
- 貿易委員會, 美國 및 캐나다의 貿易委員會法-USITC.CITT-, 1987.
- _____, 濠洲의 産業被害救濟制度, 1988.
- _____, 産業影響調查結果-고추가공제품-, 1989.
- 産業研究院, 先進國의 通商政策과 通商機構-中進國 規制側面을 中心으로-, 1986.
- _____, 美國의 通商關係法 解說, 1989.
- _____, 韓國貿易의 長期展望, 1989.
- 商工部, 美國 ITC運營節次 規定, 韓國貿易委員會, 1988.
- 商工會議所, 國際化時代의 輸入管理制度 發展方向, 1994.
- 서울大經濟研究所, 韓國의 經濟發展-평가와 새구상-, 제14회 경제학 심포지움, 1988.
- 서울大法學研究所, 貿易關聯制度 先進化를 위한 調查用役報告書, 1985.
-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1994. 10. 제166호.
- 韓國貿易協會, 濠洲 反덤핑·相計關稅制度, 통상자료89-6, 1989.
- _____, 美國의 通商關係法, 1989.
- _____, GATT解說(譯), 1988.
- _____, 輸出入業務要覽, 1987.
- _____, 輸出入節次解說, 1985.
- _____, 美國의 主要通商法規-'84通商關係法을 中心으로-, 1986.
- _____, 對外貿易法令集, 1993.

II. 外國文獻

R.E. Baldwin. *Trade Policy in a Changing World Economy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John H. Jackson, & William J.Davey.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2nd ed).

D. Greenway. *International Trade Policy*, London : Macmillan. 1983.

ABSTRACT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for industrial damage in accordance
with Korea's importation

Park Kyung-Gae

Major in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Trade

Hansung University

In case of our country, as a result of pushing for the import liberalization policy through a full-fledged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ince the 1980's, it has reached the import liberalization rate of 98.1% exalted to the degree of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breast of propelling this import liberalization, most countries, under the regulation of GATT, has sought for systematic devices for protecting the domestic industry.

They employs the protective means operated after affairs, both by anti-dumping tariff and reciprocal tariff system in case of the unfair trade practice and by the dispensation of emergency importation limitation - the relief system of industrial damage - in case of the fair trade practice.

In an effort to positively cope with this change of the economic

condition at home and abroad, our country is in a position to rearrange and improve the trade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trade regulations deviating from the existing importation management system operated before affairs.

It is shown that of late, the revision of the oversea trade law and the tariff is reflected on the volition of Government to make an attempt to pursue for the advancement of the trade - related systems.

The relief system for the industrial damage, which has been mainly utilized by advanced countries, was introduced by the importation for the first time in 1987, and changed into the system of the advanced countries' mode, which approached to the item 19 of GATT in 1989 and has been maintained till these days.

In this study, throug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relief for the industrial damage,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what it was and why it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necessity to cope with it.

In addition, with a research on the method of the relief for industrial damage and its advanced countries' systems for models, I analyzed its present situation in our country in view of it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its procedure, and suggested a systematic complement plan on it after drawing out its problems.

There would be no demur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relief system for industrial damage and the necessity of its development.

Accordingly, at stake is how we can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lief system for industrial damage.

The present relief system for industrial damage can be tinged of a transitional nature for adapting itself to a stream of great change over all sectors of economy - the opening of importation.

Many problems are exposed to the methodology of how to deal with industrial damage which can occur at the stage of getting into the advanced country from the developing country:

Firstly, there are problems of dualized affairs since in the affair of industrial damage in our country, the Commerce and Trade Committee is in charge of the safeguard system, whereas the Ministry of Finance takes charge of countervailing duty system and dumping.

Secondly, there are problems for complainants to suggest materials and opinions, taking charge of the acceptance to the application for anti-dumping tariff system and judgment of dumping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of the industrial damage investigation by Korean Trade Commission(KTC) and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by the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Thirdly, there are problems on the semi-independency of KTC subordinate to the Ministry of Trade and Commerce, in terms of rights such as appointment, budget and personnel.

Lastly, KTC, through which the damage judgment and relief measures can be appealed is not specialized in terms of its nature, supporting personnel and budget scale, compared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regards, the compl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in enforcing the judgment and the investigation into the damage of domestic industry by importation with its relief measures, it is needed that we should heighten its investigation and judgment ability to the extent of the international level by securing and employing the expert manpower in an effort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the rightness without the international trade friction.

Secondly, the KTC needs to become a quasi-judicial independent organ as a specialized one capable of investigating and judging the industrial damage.

Latly, it is desirable that since the condition for imposing the emergency tariff and the mediation tariff is not only duplicated with the relief system for the domestic industry damage caused by the surge of specific goods under the oversea trade law, but also may be a cause of international trade friction, i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its system.